

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

- 제정 : 2009. 2. 23. □ 개정 : 2019. 11. 29.
- 개정 : 2017. 12. 28. □ 개정 : 2020. 9. 1.
- 개정 : 2018. 8. 31. □ 개정 : 2022. 3. 1.
- 개정 : 2019. 6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, 사립학교법,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과 수원과학대학교 학칙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(이하“평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, 제4호, 제5호의 경우는 자 문에 한한다.

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대학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7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 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평의위원회에서 추가 구성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나,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.

1. 교원 - 3명
2. 직원 - 3명 (단, 조교 1명 포함)
3. 학생 - 2명
4. 동문 - 2명
5. 정책전문가 - 1명

② (위촉)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 는 자를 위촉한다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직원 전체 구성 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.

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는 총학생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. 단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(과대표)에서 추천하는자를 위촉할 수 있다.

④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는 총동문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.

⑤ 정책전문가로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위촉한다.

⑥ <삭제 : 2019.11.29.>

⑦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격정지) 평의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권한 행사를 정지한다.

제5조(자격상실) ① 교수 및 직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직 및 퇴직
2. 직위해제
3. 징계처분(감봉 이상)
4.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

② 학생 평의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학 및 졸업
2. 징계처분(유기정학 이상)
3.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

제6조(의장 등)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되,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
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제7조(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,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

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단위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접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소집)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
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2.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② 회의개최 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함께 교내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공고를 하고, 회의 목적, 시간,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20.09.01.>

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10조(간사) 평의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회의록) ①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장, 부의장 및 의원 1인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, 회의록의 게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20.09.01.>

1.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④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고,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

제12조(자료제공) 의장은 평의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의의 공개) ① 의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, 학생,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.

② 방청인은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제14조(비밀유지) 평의원회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예산)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추천)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, 평의원회 위원 중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평의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한다.

② 추천위원회 위원후보자는 법인 정관 제25조 및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.

제17조(기타사항) 평의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